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안심공제사업 안내

I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제18조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II 목적

-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
- 학교현장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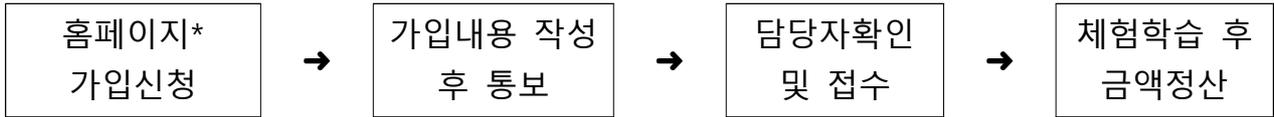
III 보상기준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보상
- 보장내용을 근거로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 학교안전법 제34조에서 보상되는 공제급여를 제외한 보상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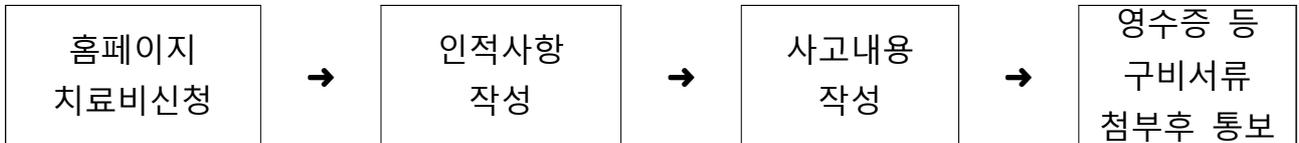
가입 및 보상절차

○ 가입(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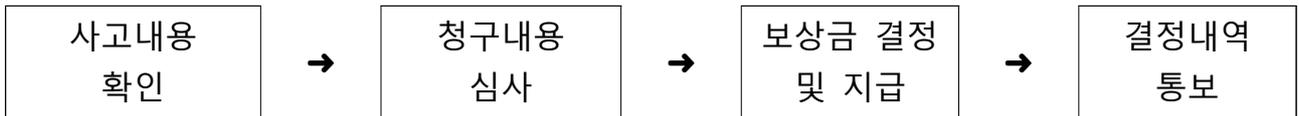


*바로가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https://www.ggssia.or.kr>) ⇒ 여행자안심공제사업(클릭)

○ 치료비 신청(학교 또는 학부모)



○ 보상(공제회)



여행자안심공제 보상 청구시 담보별 구비서류

※ 보상청구시 해당구비서류 스캔하여 파일첨부 <개정 2020. 9. 7.>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치료비	1.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에 제출한 경우 생략) 2. 청구인 통장 사본(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에 제출한 경우 생략) ※ 부득이 청구인(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이외에 타인명의 계좌 지급요청 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제출 필요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치료비	1. 진단서(질병치료 관련 내용 기재) 또는 처방전·확인서(질병명 기재된) 등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5. 청구인 통장 사본 ※ 부득이 청구인(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이외에 타인명의 계좌 지급요청 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제출 필요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위로금	1. 사망원인이 확정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청구인 통장 사본(부·모 중 위임받은 1인만 청구 가능,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청구) ※ 부득이 부모 외 형제, 자매등이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제출 필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 전염병위로금	1. 진단서(전염병 관련 내용 기재)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3. 청구인 통장 사본 ※ 부득이 청구인(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이외에 타인명의 계좌 지급요청 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제출 필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휴대품)손해	1. 사고경위서(학교장 작성) 2. 비용지출에 관련한 증빙서류(수리내역서, 견적서 등) 3. 비용지출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간이 영수증 제출 불가 4. 피해물 수리 전·후 사진 5. 재물 소유관련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7. 청구인 통장 사본 ※ 부득이 청구인(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이외에 타인명의 계좌 지급요청 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제출 필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	1. 대인사고 청구시 - 사고경위서(기관작성) - 진단서(치료와 관련한 의사의 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합의서 또는 합의금 이행각서 1부 - 기타 증빙자료(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 청구인 통장 사본 2. 대물사고 청구시 - 사고경위서(기관작성) - 피해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서류 - 수리비 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 합의서 또는 합의금 이행각서 1부 ※ 간이 영수증 제출 불가 - 기타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청구인 통장 사본(소유자 또는 소유자 보호자 명의) ※ 부득이 청구인(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이외에 타인명의 계좌 지급요청 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정대리인 또는 피공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요

V

여행자공제료 및 보장내용

○ 여행자공제료

(2020~2021년도 기준, 단위: 원)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비고
유치원	480	480	600	
초등학교				
중학교	1,080	1,080	1,200	
고등학교	1,320	1,320	1,800	
교직원 등 성인	1,320	1,320	1,800	

○ 보장내용

(단위: 원)

담 보	가입금액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1,0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	5,0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Q1 학교외 타기관에서 여행자안심공제 공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금자명은 가입신청 학교명으로 해야 합니다.

Q2 체험학습일 기준 언제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한가요?

출발일 기준 3주 전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가입신청시 학생별 학부모의 동의절차가 필요한가요?

학생에 대한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외 학부모에 대한 동의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Q4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는 체험학습이 아닌데 여행자안심공제 가입신청 및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는 체험학습이 아닌 경우 계약의 무효로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또한 사고 발생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여행자안심공제 가입신청시 학교안전법 제2조 “교육활동” 해당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여행자안심공제 공제로 납부는 언제해야 됩니까?

여행종료일 이후 5일 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 체험학습 종료일 포함 5일 이내(주말포함)에는 수정만 가능하며,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여행종료 후 최종 확정된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가입신청시 인원수 100명, 최종 체험학습 인원 90명인 경우 90명에 대한 공제료만 납부

Q6 타기관 등의 자체적인 배상보험이 있으면 여행자안심공제 보상이 안 되나요?

다른 법령에서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경우 이중보상되지 않으며, 학교안전법 제36조 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법령에서 보상되지 않는 질병치료비, 질병사망위로금, 특정전염병위로금, 재물손해, 제3자 배상책임 손해의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Q7 여행자안심공제사업 치료비 신청 시 계약번호는 무엇인가요?

계약번호는 학교에서 공제가입 신청 후 발급받은 번호 입니다.

학교에서는 여행자안심공제사업-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학부모나 기타 신청인께서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번호를 받으셔야 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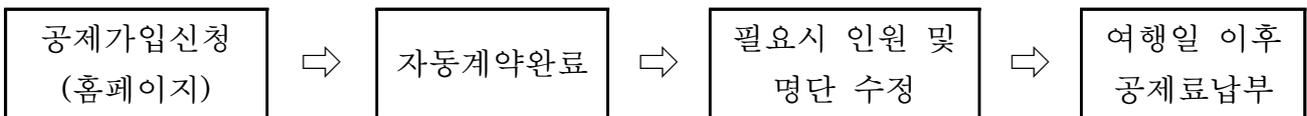
여행자안심공제 심사지침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020. 4. 16. 시행)

I 여행자안심공제 가입 및 치료비 신청방법

□ 여행자안심공제 가입방법(<http://www.ggssia.or.kr>)

1. 업무 과정



2. 단계별 화면 및 설명

사업안내	공제가입신청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치료비신청	치료비신청 처리현황
------	---------------	-------------	-------	------------

공제가입신청

기본사항

기관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담당자*	<input type="text"/>	<small>* 본인인증 후 자용으로 입력됩니다.</small>
연락처*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본인인증"/>
비밀번호*	<input type="text"/>	<small>머릿 뒷자리만 표시 하오며, 수검이제시 필요안나니</small>

여행정보

가입대상사	<input type="text" value="선택"/>
출발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여행기간	<input type="text" value="선택"/>
인원	<input type="text" value="0"/>
공제료(원)	0 원

- 총 인원수 0명 - 총 공제료 0원

가입대상자 추가

남입공제료	0 원	<small>예규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계좌번호: 농협 301-0268-1402-51 / 공제료는 여행일 이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small>
여행명단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input type="button" value="명단서식 다운로드"/>

*명단 서식은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어 명단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누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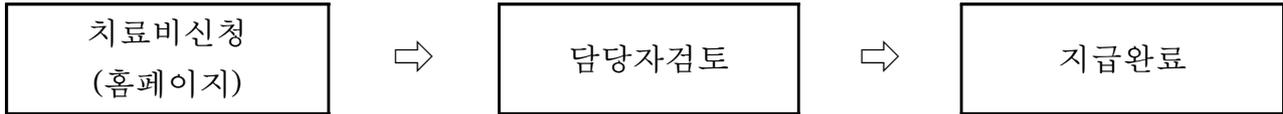
- 가. 기관에서 담당자는 본인인증 방식으로 공제가입 신청을 할 수 있음
- 나. 기본사항과 여행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행정보에 가입대상자, 출발일, 인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음
- 다. 여행자 명단은 반드시 명단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제공한 서식에 맞게 작성

사업안내	공제가입신청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치료비신청	치료비신청 처리현황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신청내역 조회결과							
계약번호	공제료	신청일	담당자	현황	명단확인	조회출력	
2020-00009	43,200원	2020-03-20	최**	입금대기		가입신청서 계약서 영수증	수정 삭제
2020-00008	10,800원	2020-03-20	최**	입금대기		가입신청서 계약서 영수증	수정 삭제
2020-00007	21,600원	2020-03-19	최**	입금대기		가입신청서 계약서 영수증	수정 삭제
2020-00007	2,400원	2020-03-18	최**	입금대기		가입신청서 계약서 영수증	수정

- 라.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계약번호 공제료 신청일 명단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가입신청서와 계약서는 출력이 가능함
- 마. 영수증은 공제회 담당자가 공제료 확인 후 입금완료로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출력이 가능(공제료 납부 후 영수증에 대한 출력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요청)
- 바. 여행일 이전까지는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여행일부터 5일 이내에는 수정만 가능,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함
- 사. 공제회 담당자가 입금완료로 변경해주면 수정, 삭제가 전부 불가능 하도록 버튼이 사라짐
- 아. 여행일 이후 공제료 입금이 잘못되거나 여행이 취소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1588-5255)로 문의 후 해당 현장체험 학습 취소, 과오납 관련 공문을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 여행일 이전에 여행이 취소될 경우 가입신청 내역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1588-5255)로 문의 후 삭제 요망

□ **여행자안심공제 치료비 신청방법**(<http://www.ggssia.or.kr>)

1. 업무 과정



2. 단계별 화면 및 설명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applying for treatment fees.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사업안내', '공제가입신청',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치료비신청' (highlighted in blue), and '치료비신청 처리현황'. Below the tabs is the title '치료비신청'. A section titled '기본사항' (Basic Information)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and options:

- 계약번호* (Contract Number): Two input boxes separated by a hyphen.
- 기관명* (Institution Name): Input box with a '찾아보기' (Search) button.
- 사고자 성명* (Accidentee Name): Input box.
- 사고자 구분* (Accidentee Category): Radio buttons for '학생' (Student), '교직원' (Staff), '일반인' (General), and '기타' (Other).
- 생년월일* (Date of Birth): Dropdown menus for '년도' (Year), '월' (Month), and '일' (Day).
- 청구인* (Applicant): Input box with a note: '*본인인증 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Automatically entered after self-authentication).
- 청구인 연락처* (Applicant Contact): Input box with a '본인인증' (Self-authentication) button.
- 사고일시* (Accident Date/Time): Input box with a '시' (City) dropdown.
- 사고장소* (Accident Location): Input box.
- 사고내용* (Accident Details): Large text area with a note: '*유해물의 경우 학교에서 사고경위서를 받아 첨부해주세요' (If hazardous, please attach an accident report from the school).
- 청구금액* (Claim Amount): Input box with a note: '*원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Won, please enter only numbers).
- 은행명* (Bank Name): Input box.
- 계좌번호* (Account Number): Input box.

- 가. 치료비신청은 기관(학교) 담당자 또는 학부모가 신청 가능
- 나. 청구인(공제급여 수령인)이 교사 등 제3자인 경우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
- 다. 청구인은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가입 신청 후 **발급받은 계약번호가 다를 경우 신청이 불가능**
- 라. 학부모는 **반드시 학교에 계약번호를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 하여야 함
- 마. 구비서류는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신청(**우편제출 X**)

사업안내	공제가입신청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치료비신청	치료비신청 처리현황
------	--------	-------------	-------	-------------------

치료비신청 처리현황

신청내역 조회결과

계약번호	학교명	사고자성명	청구금액	지급액	처리상태	비고
2020-00100	의정부중학교	테스트2	540,000원	500,000원	처리완료	
2020-00006	의정부중학교	김테스트	50,000원	0원	보완	내용보기
2020-00006	의정부중학교	김아무	0원	0원	담당자검토중	
2020-00002	의정부중학교	테스트2	0원	0원	서류접수	

바. 치료비신청 처리현황은 신청자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 하여 로그인 함

사. 지급액 및 처리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보완 일 경우 공제회 담당자가
 쓴 내용의 글을 확인 할 수 있음

II

보장 내용 및 보장 기간

□ 보장내용

(단위: 원)

담보	가입금액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1,0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 안전 사고 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휴대품)손해	2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	5,0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 보장기간

담보	보장기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사망 위로금	사고일 부터 30일 (사고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 전염병 위로금	사고일 부터 7일 (사고 후 7일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휴대품) 손해	사고일 부터 30일 (사고 후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	대인사고인 경우: 사고일 부터 3년 대물사고인 경우: 사고일 부터 180일

□ 용어 정의

1. “법률”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단체계약자”라 함은 법률 제12에서 정한 학교장을 말한다.
3.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라 함은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공제회를 말한다.
4. “사고”라 함은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5. “피공제자”라 함은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한다.
6. “여행자종합공제”라 함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종합공제를 말한다.
7. “보상기간”이라 함은 체험학습 당일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출발장소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시간부터 체험학습 종료(해산을 포함)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 등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한다.

8. “보상금”이라 함은 사고로 인한 공제회가 보장하는 내용의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9.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2016. 1. 1. 시행)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다만 8차 개정 등 업데이트 되는 경우 최신 고시된 내용으로 심사한다.
10. “휴대품”이라 함은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로 부피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목발, 보조기 등)는 제외한다.
11.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라 함은 보험업법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직원(보조인 포함)을 말한다.

□ 보상하는 손해

1. 공제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 가.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신체손해 중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치료비용
 - 나.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신체손해 중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비용외 질병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한 치료비용
 - 다.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신체 손해 중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비용 외 질병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위로금. 단, 사고 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 포함)등으로 기인한 사망사고는 제외한다.
 - 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특정전염병」분류표(통계청 고시 기준)에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의료법 상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위로금
 - 마.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공제자 소유의 ※ **휴대품** 등 재물손해
(※휴대품: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PC, 블루투스 마이크·헤드셋, 손지갑, 가방)

- 바.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2. 공제회가 사고로 인해 보상하는 보상금의 한도는 P10. 보장내용과 같다.
- 3. 공제회가 사고로 인한 보상기간은 P11. 보장기간과 같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공제회는 법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가. 법률 제2조 및 제36조 내지 제40조에 따라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 및 법률에서 정한 비급여항목 중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 병실차액비용, 식대, 영양제 주사료 등은 제외한다.(단, 제36조에 대한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치료비용은 계약상 보상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 나. 법률 제2조 및 제48조에 따라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비용보전 비용
 - 다.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2.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가.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 나.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단,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발생한 사고 중 피공제자의 중과실로 기인한 사고인 경우는 보상할 수 있다.
 - 다.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
 - 라.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마. 피공제자가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바.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등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
 - 사.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재물 손해시 수리에 필요한 직접손해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비용 및 신체상 손해시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을 제외한 모든 간접비용
 - 아.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간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자. 다른 법령(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보험금은 제외)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받을 수 있는 경우 포함) 그 차액
 차.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받을 수 있는 경우 포함)그 차액

□ 참고사항

1.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여행자안심공제 계약서는 사이트주소(<http://www.ggssia.or.kr> ⇒ 메인화면 상단 우측
 ⇒ 여행자안심공제사업 클릭-공제가입신청, 가입시 유의사항-계약서 바로보기 클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이트주소 <http://www.ggssia.or.kr> ⇒ 소통마당⇒ 자주하는 질문에 여행자공제 관련
 질의응답 등재
4. 여행자공제료 입금계좌는 사이트주소 <http://www.ggssia.or.kr> ⇒ 여행자안심공제사업
 ⇒ 공제가입신청 ⇒ 여행정보 하단에 등재

납입공제료	0원 <small>예금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계좌번호: 농협 301-0268-1402-51 / 공제료는 여행종료일 이후 5일 이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small>
여행명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input style="flex-grow: 1;" type="text"/> <div style="margin-left: 5px;">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input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 10px;" type="button" value="명단서식 다운로드"/> </div>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명단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명단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누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엑셀 파일은 97 - 2003 버전 (.xls) 파일이어야 합니다.</p>